

완산구청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(구내식당 보조 인력) 채용 변경 공고

완산구청 구내식당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.

2025년 11월 11일

완 산 구 청 장

1 채용분야 및 인원

- 채용분야 및 신분 : 구내식당 대체인력 기간제근로자
- 채용인원 : 1명
- 근무기간 : 2025. 12. 1. ~ 2026. 1. 30. (기존 2026. 4. 30.)
※ 계약기간은 협의 등을 통해 추후 변경될 수 있음.
- 근무시간 : 주 5일(월~금), 1일 7시간 / 주 35시간 근무(09:00~17:00)
※ 근무시간은 현장여건에 따라 탄력 조정 가능
- 임 금 : 시간당 10,960원(2025년)/ 시간당 11,220원(2026년)**
* 2025년, 2026년 전주시 생활임금적용 / 주·월차, 공휴일 유급수당 별도 지급
** 사회보험(4대보험) 적용에 따른 보험료 중 본인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
- 근무부서 : 완산구청 구내식당
- 담당업무 : 구내식당 조리업무

2 응시자격 기준

- 응시연령 : 만 20세 이상 만 67세 미만
- 거주지 : 공고 전일 기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- 「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의2(결격사유)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

< 전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의 결과사유 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
7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10.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
11. 경력, 학력 및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여 채용된 사람
12.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취업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람

○ 응시 제한

- 전주시청 기관의 마지막 기간제 근로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
 ※2025. 5. 31. 이후 전주시청 기간제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(3개월 미만 단기간 근로자 제외)
-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

○ 우대사항

- 다자녀가정 지원자(관련 근거: 「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」 및 시행규칙)
 : 대상자 및 모든자녀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, 2명 이상의 자녀 중 1명 이상의 자녀가 19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***

구 분	3자녀 이상 가정 중 미성년 자녀수			2자녀 가정 중 미성년 자녀수	
	1명	2명	3명 이상	1명	2명 이상
가점부여 기준	만점의 3%	만점의 4%	만점의 5%	만점의 1%	만점의 2%

*** 해당 가점은 최종 선발 전 단계 적용

-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조의 집단급식소 조리업무 경험자(서류심사시)
- 조리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(서류심사시)

3 채용 방법

- 1차 : 서류전형, 2차: 면접전형(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 - 서류전형 30%, 면접전형 70% , 최종 선발 전 단계 다자녀가정 지원자 가점 부여
- 결격사유 조회 후 최종합격자 공고

4 응시원서 접수

【모집 공고 및 접수】

- 공고기간 : 2025. 11. 7.(금) ~ 2025. 11. 14.(금)
{기존2025. 11. 12.(수)}
 - 공고방법 : 홈페이지 시험/채용 게시
 - 접수기간 : 2025. 11. 7.(금) ~ 2025. 11. 14.(금)
{기존2025. 11. 12.(수)}
 - 접수처 :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행정지원팀 ☎ (063) 220-5234
 - 접수방법 :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
 - 방문 시 본인 직접 방문(09:00 ~ 18:00 근무 시간 내)
 - 전자우편 : kang1101@korea.kr(발송 후 유선 확인 요망)
- ※ 기존 서류 제출자 개별 연락

【면접 및 합격자 발표】
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일 : 2025. 11. 17.(월) 공고 예정
- 면접심사 : 2025. 11. 18.(화) 예정
 - 면접장소 및 시간 :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
- 합격자 선정 및 발표 : 2025. 11. 21.(금) 공고 예정

5 응시자 제출서류

- 응시원서 1부
- 이력서 1부
- 개인정보 조회·제공 및 활용에 관한 동의서(자필서명 필수) 1부

-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(자필서명 필수) 1부
- 우대사항 해당 관련 서류(대상자만 제출)
 - 경력증명서 - 국가기술자격증

6 기타 유의사항

- 합격자의 채용포기나 결격사유 등 발생으로 채용이 취소된 경우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 결정될 수 있음
-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
- 응시자가 없을 경우 원서 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
-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을 취소 할 수 있음
- 최종합격자는 근로계약 체결 후 근무 가능
- 우대사항 증빙서류 접수는 해당 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반영
- 본 공고 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완산구청 홈페이지에 게재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(☎063-220-5234)로 문의 바랍니다.

붙임 응시자 제출 서류 각 1부. 끝.

<별지 1>

응 시 원 서

완산구청장 귀하

본인은 2025년 완산구청 구내식당 보조 업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.

※ 아래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.

2025년 11월 일 성명 : (서명 또는 날인)

응시번호	성명	(한글)		
		(한자)		
	생년월일	. . .	(만 세)	
연락처	휴대전화		자택	
주소	(도로명 주소 기재)			
우대사항 해당 여부	다자녀 가정 해당 여부	집단급식소 조리업무 경험자	조리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소지	
	<input type="checkbox"/> 여 <input type="checkbox"/> 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여 <input type="checkbox"/> 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여 <input type="checkbox"/> 부	
경력(최근)	근무기간	근무처명	담당업무	
	년 월			

응 시 표

2025년도 전주시 완산구청 구내식당 기간제 근로자 채용

응시번호	성명	(한글)		
		(한자)		
	생년월일		성별	

1. 응시자 성명 및 생년월일은 정자로 기재
2. 전화번호는 연락을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번호까지 기재

<별지 2>

이 력 서

개인신상

성명		병역	군별	최종계급	복무기간	면제사유
생년월일						
주소						(Tel :) (HP :)
자격 면허	취득년월일	자격·면허증	시행처		비고	
경력	직장명	직위	기간	담당사무	발령청	

직무관련 정보

구분	내용
직무에 대한 이해 및 응시 취지	※ 지원동기 및 지원분야와 관련된 본인의 역량 등 기술

<별지 3>

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
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.

■ 개인정보 수집·이용

필수수집항목	수집목적	보유 및 이용기간
성명, 성별, 사진, 주민등록번호	응시자 본인확인 및 최종 채용시에 4대보험 등의 가입시 사용	인사자료로 3년 보존
전화번호	서류전형 및 면접합격통지 등에 활용	
주소	서류전형 시 관내, 관외 구분용	
응시원서, 이력서, 경력, 학력, 자격증, 가족사항 등 증빙서류	서류전형,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	

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예.() 아니요.()

■ 고유식별번호

필수수집항목	수집목적	보유 및 이용기간
주민등록번호	응시자 본인확인 및 최종임용시에 4대보험 등의 가입시 사용	인사자료로 3년 보존

상기와 같이 고유식별번호를 수집 하는것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? 예.() 아니요.()

■ 동의거부권리

개인정보 수집, 활용, 제공 동의에 거부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채용 진행에 제한됩니다.

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, 개인정보 수집, 이용,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25년 11월 일 성명 : 서명 또는 (인)

완 산 구 청 장 귀하

<별지 4>

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(제82조)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(제89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) 및 해임요구(제83조)를 받게 되므로, 채용 지원 시 본인인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.

<해당되는 문항(□) 체크>

<p>1. 공직자로 재직 한 경험이 있는지</p> <p><small>*공직자의 범위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「국가공무원법」 및 「지방공무원법」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·임용·교육훈련·복무·보수·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,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</small>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2. ‘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’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(다만, 적발 시기는 재직 중, 퇴직 후 불문)</p> <p><small>* 부패행위 :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·관리·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 * (예시) 성희롱, 성매매, 음주운전, 폭행, 단순업무상 과실, 복무위반, 불성실 : 비해당 금품요구, 편의수수, 공금횡령, 공용물 사적사용, 수당·여비 부당수령: 해당</small>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3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</u>된 사실이 있는지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3-2. 위 퇴직일(당연퇴직·파면·해임일)로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</u>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1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1. 해당 부패행위로 <u>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</u>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2.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(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)부터 <u>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(5년 내)</u>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4-3. 권익위법(‘16.3.29. 제14145호로) 시행(’16.9.30.)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⇒ 취업제한대상자 해당(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, 부칙 제2조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1, 2, 3-1, 3-2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1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<p>1, 2, 4-1, 4-2, 4-3 (모두 충족) ⇒ 취업제한대상자(제82조 제1항 제2호)</p>	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

※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.

20 년 월 일

생년월일 . . .

지 원 자

(서명)

완산구청장 귀하